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기획재정담당관실
	2018년 1월 2일(화) 조간 ('18. 1. 1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한순기 사무관 김성일
		연락처	02-2100-3202 02-2100-3203

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**주민**이 **온라인으로** 소재지역의 **조례 제·개폐를 청구**할 수 있게 됨
- **창업벤처 중소기업**의 **지방세 감면**이 **대폭 확대**
- **특별재난지역** 선포대상이 시·군·구 단위에서 피해집중 **읍·면·동까지 확대**
- 전국단위 **민방위훈련**을 지진·화재 대피 등을 포함한 **국민참여·체험** 형태로 강화하고, 年 2회에서 **4회로 확대 실시**

□ **행정안전부**(장관 김부겸)는 **주민생활 편의, 민원서비스, 국민안전** 등 각 분야에서 **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**를 발표했다.

○ 행정안전부는 **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**으로 **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**하여, **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**하고 **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**해 나가기로 했다.

-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**안전 선진국으로 도약**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.

< 주민생활편의 분야 >

1 온라인 주민조례 제·개폐 청구 시행 (1월)

○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**조례 제·개폐 청구**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,

- **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**(www.ejorye.go.kr)이 도입('18.1.15.)됨에 따라 **온라인**으로도 조례 제·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**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.**

2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(1월)

○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**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**, 여성화장실에는 **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**된다.

-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**소변기 가림막**이 설치되며, 화장실 외부에서 **내부가 보이지 않도록**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.

3 제주 4·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(1월)

○ 제주 4·3사건 **희생자와 유족**에 대한 **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**된다. 제주도 외,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**1년간**('18.1.1.~ 12.31.) 신고할 수 있다.

- 제주도청이나 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,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.

4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(3월)

○ 올해 3월 22일부터는 **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**할 수 있게 된다.

- **보행자의 안전**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**페달보조 방식**으로, ②25km/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, ③전체 중량이 **30kg 미만**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.

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(1월)

○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**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**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**납세자보호관이 배치**되어, 주민들이 보다 나은 **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,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**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.

-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·법률·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,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.

6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(1월)

○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% 수준인 **20개비 당 897원**(일반담배는 20개비당 1,007원)으로 오른다. 다만,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'17.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.

7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(1월)

○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**지방세 감면이 '20년까지 연장**된다.

-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%가 감면되며, **재산세**는 5년간 50% 감면에서 **최초 3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으로 확대**된다.

8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(1월)

○ 개인이 운영하는 **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**에 대해 **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**된다.

- 다만,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(취득세 200만원, 재산세 50만원)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%를 납부하여야 한다.

< 민원서비스 분야 >

1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(1월)

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, **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**되었으나,

-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**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***된다.

* 다만,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

2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(3월)

○ 다문화 가정의 **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**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.

-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,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**인터넷(정부24)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**받을 수 있게 된다.

3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(7월)

○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, **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**할 수 있게 되었으며,

- 올 **7월부터**는 **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(정부24)을 통해서도** 할 수 있게 된다.

* 제도 시행('17.12월)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

< 국민안전 분야 >

1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(1월)

○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**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**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**자금*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**한다.

*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최대 100%까지 선지급 가능

2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(1월)

○ 1월부터 **생활안전지도**(www.safemap.go.kr)에 **시설, 산업, 보건,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**된다.

* 그간 교통, 재난, 치안,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

○ 특히 **스마트폰**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**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**와 **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,**

- **미세먼지, 동파**(凍破)**가능지수, 교통돌발정보** 등 안전 정보 8종을 **실시간으로 제공**받을 수 있게 된다.

3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(1월)

○ **국민안전과 밀접**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(KC인증 등)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*에 대해 올해부터 **국가가 품질을 인증**해 준다.

- 인증제 운영을 통해 **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**되어 **관련 산업 육성**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* 지진 관련 제품(면진장치 등) 중심으로 시범 운영, 인증대상 점차 확대

4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(5월)

○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(45~105억원)을 넘지 않더라도 **읍면동 단위 피해규모**가 **4.5~10.5억원**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·복구를 위해 **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**할 수 있게 된다.

* (복구비 국비 추가지원)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(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～80%)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

(피해주민 간접지원) 건보료 경감, 전기·도시가스요금 등 지원

5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(연중)

○ 주민이 **적의 공습, 지진·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**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**年 2회에서 4회로 확대**하여 실시한다.

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(10월)

○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「지진 안전성 표시제」를 10월부터 **「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」**로 명칭을 변경하고, 그 대상을 **민간시설물까지 확대**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**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**하여 **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**시켜 나갈 계획이다.

참고 **2018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개요**

분야	제도	기존	개선	제도시행일/ 소관부서장
주민 생활	**주민조례 제·개폐 청구제도**	오프라인 방식의 현장서명	스마트조례개폐청구 시스템 운영 (www.ejorye.go.kr)	'18. 1. 15. 자치법규과 구본규 과장 (02-2100-4120)
	공중화장실 환경개선	휴지통 자율 비치	①휴지통 제거 및 여자화장실 위생 용품 수거함 비치 ②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계,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	'18. 1. 1. 생활공간정책과 김상진 과장 (02-2100-4260)
	제주 4.3사건 희생자·유족 추가신고	4·3사건법 제정('00.1월) 이후 5차례 신고 접수	추가신고 접수	'18. 1. 1 (~'18.12.31, 1년간) 사회통합지원과 안경원 과장 (02-2100-3770)
	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	전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전면제한	일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①페달보조방식 ②25km/h 이상 시 전 동기가 작동하지 않음 ③중량 30kg 이하	'18. 3. 22. 생활공간정책과 김상진 과장 (02-2100-4260)
	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	자치단체 조례로 자율 설치	①법률로 설치 의무화 ②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 전담	'18. 1. 1. 지방세정책과 김성기 과장 (02-2100-3591)
	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	20개비당 528원	20개비당 897원 * 일반담배 20개비당 1,007원	'18. 1. 1. 지방세정책과 김성기 과장 (02-2100-3591)

분야	제도	기존	개선	제도시행일/ 소관부서장
	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	'17년까지 취득세(75%) 재산세(5년간 50%) 감면	①'20년 말까지 연장 ②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 (3년간 100%, 2년간 50%)	'18. 1. 1. 지방세특례제도과 김영빈 과장 (02-2100-3626)
	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	지방세 감면 없음	①개인 운영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(지역아동센터)용 부동산, 취득세·재산세 면제 ②단 최소납부세제* 적용 *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, 재산세 50만 이상일 경우 면제액의 15% 납부	'18. 1. 1. 지방세특례제도과 김영빈 과장 (02-2100-3626)
민원 서비스	**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**	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요구 시 1MB 이내만 무료	파일 용량에 관계없이 전면 무료화	'17. 12. 21. 정보공개정책과 장동수 과장 (02-2100-3430)
	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표기	(신청) 배우자 동반하여 읍·면·동 방문 (표기) 등본 하단에 별도 배우자 표기	(신청) 1회 방문 등록 후 인터넷 발급 가능 (표기)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표기	'18. 3. 20. 주민과 김군호 과장 (02-2100-3830)
	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	국내 주소 관리 방법 없음	인터넷(민원24)으로도 해외체류신고 가능	'18. 7월 주민과 김군호 과장 (02-2100-3830)
국민 안전	**사회재난 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 지급**	자연재난 피해자에게만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	사회재난 피해자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선 지급 1. 구호금 : 100% 2. 생계비 : 100% 3. 주거비 : 100% 또는 7일분 4. 구호비 : 100% 또는 7일분 5. 교육비 : 100%	'18. 1. 18. 복구지원과 박성식 과장 (044-205-5310)

분야	제도	기존	개선	제도시행일/ 소관부서장
	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서비스 분야 확대	4대 분야 (교통, 재난, 치안, 맞춤안전)	8대 분야로 확대 (4대 분야 + 시설, 산업, 보건, 사고안전)	'18. 1월 예방안전과 정윤한 과장 (044-205-4510)
	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도입	-	재난안전제품의 품질을 국가에서 인증	'18. 1. 18 재난안전산업과 박종복 과장 (044-205-4186)
	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	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선포 (피해규모 45~105억원 이상)	피해 집중 읍면동단위까지 확대하여 선포 (피해규모 4.5~10.5억원 이상) -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- 건보료 경감 등 간접지원 확대	'18. 6. 1. 복구지원과 박성식 과장 (044-205-5310)
	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확대 실시	주민참여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2회 실시	연 4회 확대 실시 * 북핵, 미사일 위협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및 지진화재 대피훈련 강화	연중 민방위과 정한율 과장 (044-205-4360)
	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제 도입	공공시설물 대상 지진 안전성 표시 (지진 안전성 표시제)	민간시설물까지 지진 안전 인증 확대 (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)	'18. 10. 25. 지진방재정책과 박광순 과장 (044-205-5180)